

알기쉬운 세무상식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②

지난호에 이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을 계속 실는다. 이 내용은 하이텔로 제공되는 국세청세무정보를 토대로 본 편집부에서 정리·게재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해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설정, 1년에 4차례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사업실적 → 4.1~4.25 신고 납부
 확정신고 : 1.1~6.30 사업실적 → 7.1~7.25 신고 납부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사업실적 → 10.1~10.25 신고 납부
 확정신고 : 7.1~12.31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신고 납부

사업자는 매신고기간 별로 발생한 거래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시 내야 할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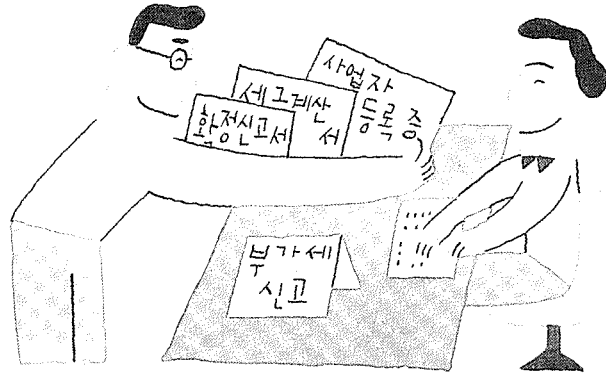
-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부
-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제출용)
- 영세율 첨부서류(해당사업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확정신고서 검열을 위하여 반드시 지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의 처음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경우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한편 외국법인의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50일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25일의 신고기간을 더 부여하고 있다.

과세특례자

일반과세자가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는데 비해 과세특례자는 신고납부 2번만 하고 나머지 2번은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가까운 우



체국에 납부하면 그것으로 예정신고는 종결된다.

신고방법

- 제1기 : 1.1~6.30 실적 → 7.1~7.25 신고 납부
- 제2기 : 7.1~12.31 실적 → 다음해 1.1~1.25 신고 납부

신고시 첨부서류

- 신고서 2부
 - 매입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검열을 위하여 반드시 지참
- 세무서에 신고한 세금은 그 신고기간중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야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예정고지서 발부내용

- 제1기 : 4.1~4.10 고지서 발부 → 4.1~4.25까지 납부
 전년도 제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 제2기 : 10.1~10.10 고지서 발부 → 10.1~10.25까지 납부
 제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

계속 사업자로써 위 고지서 발부시기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과세특례자는 개업일 이후 처음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세는 무엇인가?

소득세는 1.1~12.31까지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간연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11월에 내야 한다.

따라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미리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다.

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분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